

광주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0가단52141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형주

변 론 종 결 2022. 1. 14.

판 결 선 고 2022. 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의 2015. 8. 10.자 금전증여계약은 3,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주)D과 2011. 2. 17. 기업일반운전자금 대출명목으로 20,000,000원을, 2011. 3. 11. E대출 명목으로 440,000,000원을 대출받아 여신거래를 지속해오던 중 원리금 납입을 지체하였다. 나. (주)D은 2014. 12. 30. F 유한회사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채권을 F 유한회사에 양도하고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F 유한회사는 2020. 2. 25. 원고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20차전10578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3. 31.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203,727,806원 및 그 중 129,942,072원에 대하여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0. 4. 18.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C과 2015. 1. 2.경 협의이혼 하였는데, 피고 소유의 ‘경기도 의정부시 G부동산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2008. 11. 27. 설정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 채무를 2015. 8. 10. 모두 변제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C은 2015. 8. 10.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위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돈 1억 원을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대출금채권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일부로서 청구하는 3,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2015. 1. 2.경 C과 이혼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도 C이 사업자금으로 가져다 쓴 돈을 피고가 이혼 전후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모은 돈으로 직접 변제한 것이고, C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변제한 것이 아니다. 한편 피고가 2015. 8. 10. 변제한 돈은 2,300만 원이므로, C이 증여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2,300만 원을 초과하는 800만 원 부분은 5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되어야 한다.

또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파산절차 면책으로 자연채무가 됨으로써 위 채무에 기초한 원고의 손해행위취소는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597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이 2020. 7. 24. 서울회생법원 2020하단103452호, 2020하면103452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그 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사실, ② C은 2021. 9. 30. 파산 폐지가 되었고 2021. 10. 1.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파산채권인 위 대출금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에 규정된 면책제외대상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에 대하여 C의 책임이 면제된 이상 위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애란

1) 원고가 2020. 11. 10.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부동의하여(2020. 11. 11.자

준비서면), 위 청구취지 변경은 소의 일부 취하로서의 효력이 없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